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임만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5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영,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7명)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에는 공인노무사가 누락되어 있어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 운영·관리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서울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에 있어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를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p> <p>1. (생략)</p> <p>2. <u>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u> 또는 <u>세무사</u> 자격이 있는 사람</p> <p>3. ~ 6.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